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

발간사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첫 대체역 편입신청이 접수되면서 대체역 제도는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성실한 병역이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의 형성과 실천 여부, 대체역에 대한 이해와 대체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인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연속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브루더호프 공동체 등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청인들이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역 제도가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들의 신념과 실천을 깊이 있게 검토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신념을 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행 제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2024년 5월 현행 대체역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대체역 제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신중히 다져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5년은 끊임없는 학습과 조정,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체역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신청인의 진지한 고민과 용기, 그들과 진심으로 마주해온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이 오늘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에서 공개된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양심’과 ‘공정성’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병역제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대체역 제도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목차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가. 설립 과정	8
	나. 구성	9
	다. 사무국 조직	10

02	운영 성과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현황	14
	나. 대체역 편입심사 및 현황	16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20

03	회의 운영	
	가. 개요	34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36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38

부록

대한민국헌법	6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8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5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119

표 목차

표 1-1	추천 기관별 위원회 위원 정원	10
표 1-2	대체역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10
표 1-3	위원회 공무원 정원	11
표 2-1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사유별)	15
표 2-2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역종별)	15
표 2-3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16
표 2-4	대체역 편입심사 누계	19
표 2-5	2024년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19
표 2-6	전시근로역과 전시근로소집의 비교	20
표 2-7	전시근로소집 임무 및 대체역 편입신청 가부 비교	20
표 2-8	대체역 편입신청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위원 의견	24
표 2-9	대체역 제도 비교(대한민국, 오스트리아)	30
표 3-1	사전회의 현황	34
표 3-2	전원회의 현황	35
표 3-3	대체역 편입취소자 현황	41
표 3-4	헌재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등 결정의 '결정 요지'	47

그림 목차

그림 1-1	위원회 조직도	11
그림 2-1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17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가. 설립 과정

나. 구성

다. 사무국 조직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가. 설립 과정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심사하여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1949년 「병역법」 시행 이후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과거에는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처벌받거나 형사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2000년대 초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¹와 가족들의 현실이 보도되면서,²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³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한편 입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도록 권고하였다.⁴

이후 국회나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 1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양심'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2019년 1월 4일 국방부 기자회견).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위원회는 대체역도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포함한 현역·보충역 등의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군 복무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신윤동욱. (2001년)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 한겨레21. 제345호
- 3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4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참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⁵

2015년부터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9일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나. 구성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대체역법」 제정 당시 위원 정원은 29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7명)이었으나, 2023년 6월 29일 「대체역법」 일부개정법률⁶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 정원이 13명으로, 상임위원의 정원이 5명에서 3명으로 각각 축소되었고, 추천기관별 추천 인원수가 2~3명씩 감소되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6 2023년 5월 16일 법률 제19404호로 개정된 것

표 1-1 추천 기관별 위원회 위원 정원

(단위 : 명)

계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 협회장
13		2	2	3	2	2	2

표 1-2 대체역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 명)

계	구분	법조인	교수	인권 활동가 등	공무원(전·현직)
13		5	1	2	5

다. 사무국 조직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대체역법」 제10조). 사무국은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획과는 위원회 회의 운영, 위원 관리 등 대체역 편입심사 총괄, 기획·인사·예산·전산·국회 등 행정 지원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심사운영과는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사실조사 등을 담당한다. 과거 심사기획과에서도 사실조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심사운영과에서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24. 12. 31.부로 심사운영과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심사운영과의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심사기획과로 이전하였다.

위원회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 사무국장 포함 31명이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에 해당한다.

그림 1-1 위원회 조직도

(2024.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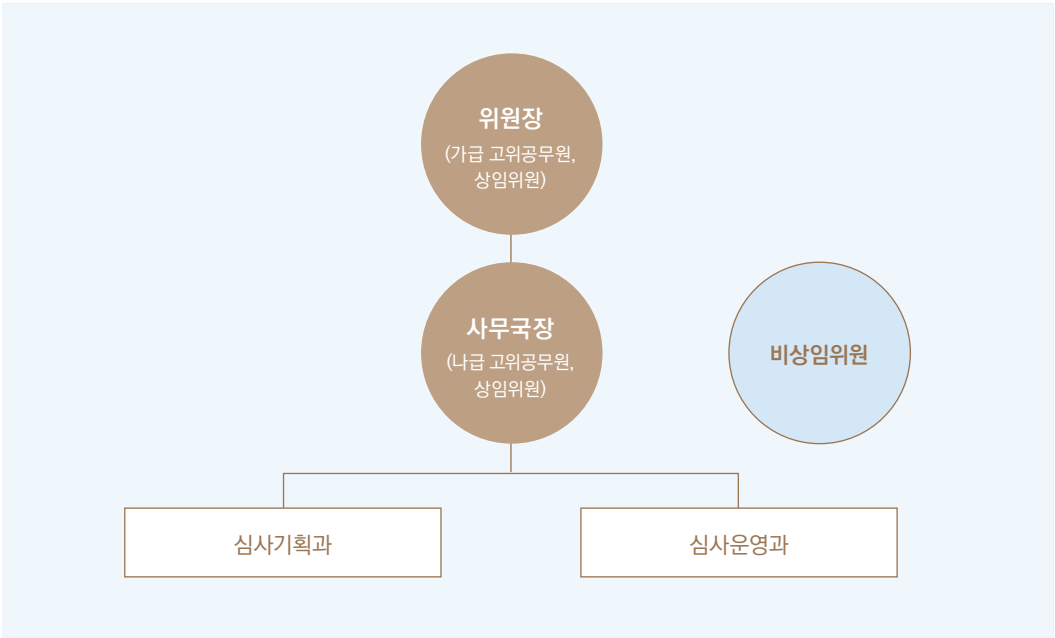


표 1-3 위원회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이하
31	2(가급 1, 나급 1)	2	11	8	8

02

운영 성과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현황

나. 대체역 편입심사 및 현황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02 운영 성과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현황

1) 개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대체역법」 제3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30세 이하⁷ 현역병입영 대상자 △ 30세 이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2) 신청 방법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각각의 주변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변인 진술서를 작성한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⁸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편입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어 위원회 누리집(<https://www.mma.go.kr/simsa/index.do>) ‘민원신청’을 통해서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7 이때 30세 이하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대체역법」 제2조, 「병역법」 제2조 제2항).

8 대체역 편입신청용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말한다.

3) 현황

「대체역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1조, 「대체역법 시행령」 부칙(2020. 6. 30.)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3,695명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였다.

표 2-1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사유별)

(2020. 6. 30.~2024.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종교적 신념		비종교적 신념	
		무죄확정자	사실조사자	무죄확정자	사실조사자
2020년	1,962	760	1,191	0	11
2021년	574	106	459	2	7
2022년	453	24	421	0	8
2023년	368	9	352	0	7
2024년	338	2	331	0	5
누계	3,695	901	2,754	2	38

* 표에서 '무죄확정자'는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체없이 인용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실조사자'는 「대체역법」에 따른 사실조사,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표 2-2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역종별)

(2020. 6. 30.~2024.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현역	보충역	예비역
2020년	1,962	1,884	72	6
2021년	574	505	62	7
2022년	453	392	33	28
2023년	368	310	44	14
2024년	338	305	26	7
누계	3,695	3,396	237	62

나. 대체역 편입심사 및 현황

1) 개요

대체역 편입심사는 사실조사, 사전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의결 3단계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 간 토의를 거쳐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표 2-3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구분	고려요소
양심결정의 근거	① 양심형성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활동 및 교리학습 · 평화와 관련된 인권·사회활동 ·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자료 등에 대한 접근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폭력의 경험
	② 양심결정의 구체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의 가르침 ·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 내용
양심결정의 실천	③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종교 생활 및 교리 학습 ·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 ·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연구 등 각종 활동 · 양심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 주변인과의 소통
	④ 본인의 징계, 수사 및 범죄 경력에 대한 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의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 사례 · 징계처분이나 위법한 행동에 대한 해명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	⑤ 군 복무 거부에 대한 이해와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 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명분에 따른 선택적 전쟁거부인지 보편적 전쟁거부인지
	⑥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역 도입취지와 복무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 대체역 복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한다(「대체역법」 제13조, 제14조).

위원회는 편입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1년 동안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24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1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하므로 편입신청의 내용에 따라 위원 간 편입심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위원회는 편입심사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대체역 편입 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하였다.

2)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가) 개요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한다.

그림 2-1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나) 사실조사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심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참고인 등의 출석 또는 진술, 진술서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대체역법」 제11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실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성장 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담당 조사관은 편입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서면조사, 신청인 면담 조사, 주변인, 단체 등에 대한 전화·현장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다.

다) 사전심사

위원회는 「대체역법」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를 두어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전심사 위원회는 회의(이하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한 신청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하고,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나 전원회의와 달리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각자 안건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표시하고, 사전심사 위원장이 이를 취합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라) 심사·의결

사전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자료 등을 검토·심사한 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최종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 특례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서 위원회는 사실조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인용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일에 징·소집 연기가 해소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 현황

표 2-4 대체역 편입심사 누계

(2020. 6. 30.~2024.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종교적 신념 사유			개인적 신념 사유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인용	3,486	3,467	891	2,576	19	2	17
기각	6	5	0	5	1	0	1
각하	8	2	0	2	6	0	6
철회 등*	80	67	10	57	13	0	13
합계	3,580	3,541	901	2,640	39	2	37

* 철회 등 : 심사중단(사망) 2건 포함

표 2-5 2024년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종교적 신념 사유			개인적 신념 사유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인용	347	347	2	345	0	0	0
기각	0	0	0	0	0	0	0
각하	1	0	0	0	1	0	1
철회	10	6	0	6	4	0	4
합계	358	353	2	351	5	0	5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1)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논의

위원회는 대체역 제도개선을 위해 전시근로역에게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전시근로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 지원 업무에

표 2-6 전시근로역과 전시근로소집의 비교

구분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소집
개념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 시 군사지원업무는 가능하다고 결정된 사람 (「병역법」 제5조)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 선포 시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차이점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의 부과 형태
대상	신체검사 5급 판정자,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자, 1년6월 이상 징역(금고) 실행 선고자, 고아자, 귀화자, 성전환자 등	병력동원소집에 미지정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표 2-7 전시근로소집 임무 및 대체역 편입신청 가부 비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임무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대체역 편입신청
보충역 (병력동원소집 미지정자,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 2. 진지구축, 도로·교량·항만·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 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 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 5. 전시 급유·급수·취사지원 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가능
전시근로역		불가
대체역	위 임무 중 아래 행위는 제외됨(「병역법」 제54조 제2항) 1. 무기·흉기를 사용·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투입되는 역종을 말한다. 이들은 대체역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지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병역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군사 지원 업무를 하더라도 무기·흉기의 사용·관리·단속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및 그 밖의 유사한 행위로부터 면제되는 데에 비해,⁹ 전시근로역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규정이 없고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또한 없으므로¹⁰ 일단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지녔더라도 전시에 폭력과 관계된 업무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후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한 사람의 경우 전시에 자신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충돌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9 「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9. 12. 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대체역법」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10 「대체역법」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사무국은 2024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정한 「대체역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전시근로역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근로소집 시 이들도 무기나 폭력과 무관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검토 보고하였다.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사무국이 좀 더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역법」 제3조 제1항만 개정할 경우 전시근로역에서 대체역으로 편입한 사람들이 다른 대체역과 같이 평시에 대체복무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음
- 역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소집 시 부여되는 임무가 문제되기 때문에 전시근로역 중에서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시근로소집 시 대체역과 같이 폭력과 관계없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군사교육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복무기간이나 근무환경 면에서 훨씬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소집 시 무기, 폭력과 관계없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전시근로소집 임무 시 무기, 폭력과 관계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을 대체역으로 국한시키는 「병역법」 제54조 제2항을 개정한다면 군사교육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요원도 대체역으로 편입신청할 필요성이 감소할 것임
- 「병역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경우 무기·폭력 임무에서 제외할 대상을 확정할 때 지금과 같은 논의가 반복될 수 있고, 군 복무 거부 신념을 근거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법」에서 통일하여 다루는 것이 체계상 일관성이 있음
- 만약 전시근로역에게도 대체역 편입자격을 부여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형 생활을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대체역 편입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이들이 제외되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방식인데 법을 적용하는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역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전시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 외 군에서 운영하는 포로수용소에서도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 확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논의

대체역 편입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역의무 부과 절차가 연기되는데, 「병역법」 제61조 제1항¹¹에서 원칙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 연기를 30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체역 제도 설계 시에도 해당 「병역법」 규정을 고려하여 30세를 초과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대체역법」 제3조 제2항 참조).

그런데 국외 체류,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수형,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30세를 넘겨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

11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2023. 6. 20.>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다가 31세 이후에 귀국하여 대체역 편입신청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31세 이상인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체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사무국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재정리해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다.

표 2-8 대체역 편입신청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위원 의견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와 31세를 달리 생각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없고, 나이를 이유로 한 신청 제한은 연령 차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 <hr/> • 군 복무 거부 신념의 형성은 연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나이를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함 <hr/> • 근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역 편입이 특혜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입신청이 가능한 연령대를 높이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임 <hr/> • 30세를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대체역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병역제도 체계를 해치지 않고도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제한은 단순히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제한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병역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병역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모든 역종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이므로, 30세를 초과한 사람에게 대체역 편입신청을 허용하여 징소집 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음 <hr/> • 대체역 편입신청 가능 연령이 19세부터 30세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언제든지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넘긴 사람까지 구제할 필요성이 빈약함 <hr/> • 대체역에 대해서만 징소집 연기 연령의 예외를 인정하면 입영 연기 목적으로 대체역편입신청을 하는 등 악용이 우려됨 <hr/> • 군 복무 거부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본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3조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대체역으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¹² 최소한의 구제책은 마련되어 있음

12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3조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3) 대체역 편입신청 재심사 제도 관련 논의

「대체역법」은 대체역 편입심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¹³ 위원회에 재심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이용할 경우 신청인의 시간이나 비용 소모가 크기 때문에, 민원 편의 측면이나 대체역 편입심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위원의 제안이 있었다.

과거 대체역 제도의 도입 시기 국회에 제출된 제·개정안¹⁴은 모두 재심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심사 기간, 절차를 단축하고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 주체를 전원회의로 일원화하여 일관성·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재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금과 같이 단심제로 입안하였다.¹⁵

그러나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¹⁶되어 행정청의

- 13 「대체역법」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⑥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14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대체역법」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 「예비군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발의안의 목록은 대체역 심사위원회(2021), 『제1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12~14쪽 참조. 당시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 15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3차, “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2019. 11. 12.), 41~44쪽 참조.
- 16 「행정기본법(2025. 3. 18. 법률 제20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개별법에 따로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대체역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위원회의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4년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입법과정, 이의신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원 신청에 대한 심사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제도가 사실상 위원회 자체 재심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 및 보고하였다.

1.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식 : 「행정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차회 전원회의에 상정하거나 또는 상정 전에 외부 자문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차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개선 필요
2.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제도 대신 독립적인 재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식 : 지금의 위원회와 별도로 다른 행정기관(국무총리, 국방부, 병무청,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¹⁷에 재심사기구를 신설하여 재심사만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개선 필요
3.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제도 대신 재심사 기능을 다른 합의제 기관에 추가하는 방식 :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각·각하 결정의 수가 그간 많지 않았고 대체역 제도

(각주 16 계속)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대체역 제도 관련 법안에서 언급한 재심사기구가 소속될 기관을 예시로 삼았다.

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기각·각하 결정의 발생 빈도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별도의 재심사 기구를 신설하기 보다 이미 존재하는 타 합의제 기관에 재심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 필요

이에 대해 위원들은 △ 「행정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심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재심사 기능을 타 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2024년 9월 까지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결정한 총 2,511건 중 기각 결정 6건, 각하 결정 8건으로 기각·각하 결정 비율이 0.56퍼센트에 불과한데 재심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방부나 병무청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등의 의견을 내었고, 논의 끝에 현행 이의신청 제도를 타 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2024년 제22차 전원회의에서 사무국은 지난 토의 결과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할 때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으로도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하며 △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기한(14일 이내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1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내에 처리하는 등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위원회에 적용하는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보고하였다.

추가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 지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면 기존에 내린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위원회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 신청인이 결정이유를 보고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살피게 될 것이므로 외부 의견 없이도 위원회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은 해당 자문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한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설령 외부에 자문 의견을 듣는다고 하여도 새로운 자료나 사실관계가 추가되지 않는 한 위원들의 기존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이제까지의 기각·각하 결정 비율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

복한 비율을 볼 때 재심사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어서 외부 자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경제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등 외부 자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무국은 외부 자문 절차 없이 현행 「행정기본법」 체계를 따라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하되, 차후 필요하다 판단되면 외부 자문 의견 청취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4) 해외 사례 조사 : 오스트리아

위원회 사무국은 외국의 대체역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대체역 제도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에서는 오스트리아 대체복무청, 종교 단체(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적십자)의 관계자를 만나 현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제도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대체복무자 및 복무 만료자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헌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고, 1975년 민간복무법의 시행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유로 종교적·비종교적 양심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소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군 복무 중인 사람과 직업 군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9개 연방 주마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서면 및 구술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자를 선발하였으나, 1993년 이후 각 위원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양심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신청인이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구술 면접 없이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대체복무 기간은 9개월이며, 현역 복무는 6개월이다.

대체복무자는 응급 구조(40%), 사회 및 장애인 지원(26.36%), 노인 지원(11.3%) 등을 포함한 16개 분야 중 본인의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의 약 80%가 원하는 기관에 배치된다. 복무형태는 출퇴근 복무를 원칙으로 하며, 통근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 대체복무자는 2주간의 휴가 외에도 취업, 가족 사유에 따른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 위반 시에는 경고, 벌금, 형사처벌,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국내 대체역 편입심사는 병무청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대체역 정책 수립, 소집 및 편입 취소 등 자원 관리는 병무청에서, 대체역 복무 관리·감독은 대체복무기관의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분담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연방 총리 산하의 대체복무청에서 대체복무자 편입 처리, 복무기관 배정·중단·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오스트리아 주 정부 사무국에서는 복무기관 승인·변경, 복무분야 업무 조정, 복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 정부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이해를 심화하였다. 대체복무 도입 배경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대체복무청은 1960~1970년대 유럽 내 병역거부권 인정의 흐름 속에서 오스트리아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군 복무 중 무기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민간복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종교적·비종교적 이유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대체복무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체복무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자의 약 45%가 대체복무를 선택하였으며, 신청자 16,492명 중 97.8%가 인용되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편입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응급 구조 등 공공영역에서 대체복무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체복무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복무기관 배정과 관련된 질의에서 복무자는 복무 시작 4개월 전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복무기관은 실제 수요에 따라 인원을 신청하며, 주 정부의 승인을 거쳐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복무자의 40%가 응급 구조 업무를 선호하며,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복무할 수 있는데 특정 기관으로 인력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에는 수요와 균형을 고려해 배정이 이루어지며, 복무자의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복무기관과 대체복무자의 실제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체복무자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약품·식료품을 전달하며 말벗 역할을 한다. 이들의 근무는 주 40시간, 주 5일이며 휴가도 보장된다. 응급 구

표 2-9 대체역 제도 비교(대한민국, 오스트리아)

구분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제도 시행	2020년	1975년
신청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소집 대상자, 예비군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제도 없음)
심사 방법	정부의 사실조사를 통한 심사주의	1991년까지 면접 심사 1992년에는 면접·서면 심사 1993년부터 서면 심사
신념 허용 범위	종교 및 개인 신념	종교 및 개인 신념
심사기구	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체복무청
대체복무기관	교정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16개 공공분야
대체복무 기간	36개월(현역병 18개월)	9개월(현역병 6개월)
복무 형태	합숙	출·퇴근 근무 원칙, 출·퇴근 불가 시 합숙

조 분야에서는 오스트리아 적십자사 소속 복무자들이 전체 응급 서비스 시간의 17~19%를 담당하고 있고, 복무자 한 명당 20%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복무 만료자 면담에서는 복무자가 심리적 장애인을 지원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이뤘다는 진솔한 경험도 공유되었다. 복무 중 수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복무 경험은 향후 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국외 출장 결과 오스트리아는 1975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판단의 어려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1992년 이후 서면심사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대체복무자와 대체복무기관이 현재 실시되는 대체복무 제도에 만족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국민들 역시 대체복무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체역 편입심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도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한 지 약 17년 이후에 서면심사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여 아직 대체역 제도 시행 초기라고 볼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대체복무 신청자의 구술 면접을 폐지한 뒤 신청자가 급증한 사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심사제도는 군 복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의 대체역 편입심사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내 대체역 제도는 다양한 복무분야와 복무기관을 갖춘 오스트리아에 비해 아직 교정시설 중심의 복무 분야, 제한적인 선택권, 합숙 위주의 복무환경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체역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 분야의 다변화, 복무자의 자율성 확대,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외 출장 보고서 전문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gtis.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회의 운영



가. 개요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03 회의 운영

가. 개요

1) 사전회의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한 신청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체역법」 제7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1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는 추천기관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나 전원회의와 달리 심사 안전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각자 인용·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사전심사 위원장이 이를 취합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2024년에는 사전심사 위원회를 각 조별 위원 5~6명씩 2개조로 운영하였고, 회차당 5~6건 정도를 심사하였다.

표 3-1 사전회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심사 횟수(회)	30	144	112	72	58	416
안건 수(건)	180	1,089	574	457	344	2,644

2) 전원회의

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 △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제안 △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대체역법」 제4조 제2항).

사전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자료 등을 검토·심사한 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최종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 특례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서 위원회는 사실조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인용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일에 징·소집 연기가 해소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4년 총 2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48건(인용 347건, 각하 1건)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심사하였고, 대체역 편입심사 기간 연장, 대체역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표 3-2 전원회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심사건수(건)	무죄확정자	673	182	29	7	2	893
	사실조사자	58	1,115	627	461	346	2,607
	소계	731	1,297	656	468	348	3,500
회의 개최 횟수(회)		6	33	25	23	22	109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¹⁸

차수 (개최일)	대체역 편입심사(건)			그 외 토의·보고 사항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결정기간 연장	
제1차 (1월 17일)		20	8	기혼자인 대체복무요원의 대체복무기관 배치 방법 보고
제2차 (1월 31일)		12	20	과거 대체역 편입자에 대한 대법원의 병역법위반 사건 유죄 판결 공유, 폭력적인 게임 이용에 대한 사실조사 방법 토의
제3차 (2월 14일)		18	20	
제4차 (2월 28일)		12	23	대체역 편입 취소자 현황 공유
제5차 (3월 13일)		12	21	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개선안 보고
제6차 (3월 27일)		12	13	소년 보호처분 이력의 심사 고려 방안 논의
제7차 (4월 11일)		18	6	사실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취득 방식 논의
제8차 (4월 24일)		18	11	위원 명단 비공개 관련 신청인의 위원 기피신청 절차 개선안 보고
제9차 (5월 8일)		18	8	〈제도 개선〉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여부 논의
제10차 (5월 22일)		12	7	〈제도 개선〉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여부 논의
제11차 (6월 5일)		12	5	대체역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

18 대체역 편입심사,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다.

차수 (개최일)	대체역 편입심사(건)			그 외 토의·보고 사항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결정기간 연장	
제12차 (6월 19일)	1	18	1	
제13차 (7월 3일)		12		위원회 「인권보호조사준칙」 개정안 보고
제14차 (7월 17일)		12		
제15차 (8월 14일)		18		
제16차 (8월 28일)		14		
제17차 (9월 11일)		12		
제18차 (10월 2일)		12		대체역 편입심사 시 인용 기각 결정의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방식 논의
제19차 (10월 23일)		18		
제20차 (11월 13일)		18		〈제도 개선〉 대체역 편입신청 재심사 제도 검토 보고
제21차 (11월 27일)		24		
제22차 (12월 18일)	1	24		〈제도 개선〉 대체역 편입신청 재심사 제도 추가 검토 보고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1) 제1차 전원회의(2024년 1월 17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20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최근 6개월 전까지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한 적이 있지만, 게임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가상현실일 뿐이므로 자신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신청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 종교 교리상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게임일 뿐이므로 신념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6개월 전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뒤부터 후회하며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의 종교생활은 꾸준히 하고 있고 대체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인정되어 인용으로 결정되었다.

보고사항으로 2023년 제23차 전원회의에서 요청되었던 대체복무요원 중 기혼자의 대체복무기관 배치 방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¹⁹ 법무부에서도 결혼한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인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복무생활을 유도하고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대체복무요원을 신규 배치하거나 전보 시 결혼 유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23. 12. 28.자로 법무부 훈령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개정²⁰하였다고 한다.

2) 제2차 전원회의(2024년 1월 31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과거 대체역 편입자²¹ 중 최근 대법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어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다. 사례자는 대체역 제도가 만들

¹⁹ 대체역 심사위원회(2024), 『제3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68~69쪽 참조

²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훈령 제1509호, 2023.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제4조, 제7조 각 참조

²¹ 2021년 제24차 전원회의 참조, 대체역 심사위원회(2023), 『제2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45~46쪽 참조

여지기 전인 2018년 철학·심리학 등에 기반하여 형성한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 사례자의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21년 9월 24일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이 2024년 1월 11일 사례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례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위원회의 대체역 편입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데 대하여 △ 법원이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 이용 이력을 두고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나, 법원의 판결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 해당 사례자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고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원회 개원 초기에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사례자에 대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 △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사례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결정이 있었다면 항소심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음 △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재판 진행 시 대체역 편입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자의 향후 병역 의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위원 의견이 있었다.

특히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등의 병역의무자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²² 편입 대상이나(「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대체역의 경우 위와 같은 수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시근로역 편입이 제한된다(「병역법」 제65조의2). 위 사례자의 경우 당사자가 대체역 편입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징역 1년 6개월 복역 후 대체역으로 36개월 간 병역을 이행해야 하므로 다른 역종에 비해 부담

22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으나 전시·사변 등에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역종으로(「병역법」 제53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았거나, 생계유지 곤란자·수형자(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고아·귀화자·전 공상자 가족·성전환자·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자 등을 사유로 편입된다.

이 과중하고 대체역에도 수행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²³ 추가로 군 복무 거부 신념과 관계없는 범죄 사실로 무조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전시근로소집 시 대체역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나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신청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한편 폭력적인 게임 이용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폭력적 게임 이용을 심사에 고려하지 않되 필요 시 확인하기로 하였으나²⁴ 위 사례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폭력적인 게임 이용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 과정에서 폭력적인 게임 이용이 자연스럽게 밝혀진 것을 원천적으로 심사자료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3) 제3차 전원회의(2024년 2월 14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4) 제4차 전원회의(2024년 2월 28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심사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공유받은 대체역 편입취소자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는 △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미복무한 경우(제2호) △ 복무태만 등으로 경고처분이 누적된 경우(제3호) △ 편입 이후부터 예비군 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에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4호) △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

²³ 참고로 대체역에 편입된 이후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편입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역법」 제65조 등에 따라 수행 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다.

²⁴ 2020년 제5차 전원회의 참조, 대체역 심사위원회(2021), 『제1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94~95쪽 참조

였거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미귀국하는 경우(제5호)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미귀국하는 경우(제6호)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제7호)로 총 7가지가 있다.²⁵

2020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3,171명 중 편입취소자는 49명으로 약 1.5%이고, 전체 대체역 편입취소자 49명 중 45명이 본인 희망으로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다.

표 3-3 대체역 편입취소자 현황

(2020. 6. 30.~2024. 1.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신청 사유		심사 여부		취소 시기	
		종교	개인 신념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집 대기	복무 중
본인 희망	45	44	1	10	35	37	8
범죄경력	4	4	0	2	2	4	0
계	49	48	1	12	37	41	8

또한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 대한 인권 보호 절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위원 질의가 있어,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차회 보고하기로 하였다.

5) 제5차 전원회의(2024년 3월 13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인권 보호 제도와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 및 개선안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의 「인권보호조사준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실조사 시 신청인의 진술 보장, 장시간 조사 시 휴식 제공,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등 신청인의 권리에 대해서 고지하고,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경우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 기한이나 신청인 보호 수단 등 구제

25 「대체역법」 제25조 참조

절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미흡하여 보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신청인에게 인권보호절차를 안내할 때 인권침해 신고를 하더라도 편입심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좋겠다거나 위원에 의한 인권침해도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제언이 있었다.

6) 제6차 전원회의(2024년 3월 27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사실조사 과정에서 군 복무 거부 신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술한 신청인에 대하여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해 왔고 일상에서 교리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군대에 간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고 전쟁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일이므로 군대에 복무할 수 없어 군대와 감옥 중 택일해야 한다면 감옥을 선택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군 복무 거부 신념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종교적 확신이 부족함을 피력한 것은 군 복무 거부 신념이 부족하다기보다 그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신청인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청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군 복무 거부에 대한 근거가 종교적 신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스스로 종교적 확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구체적 양심 형성의 시점과 그 정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대체역 편입을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의적으로 우선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위원회는 2021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조치이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한 「소년법」²⁶의 취지에 비추어 대체역 편입심사에서도 소년 보호처분 이력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²⁷ 해당 결정 이후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결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범죄 이력은 대체역 편입심사의 핵심 자료 중 하나이고 심사자료에 나타난 소년 보호처분 이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거나 침례 이후 발생한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신념에 모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과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심사나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향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위원 간에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7) 제7차 전원회의(2024년 4월 11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사회복지부요원으로 복무한 뒤 침례를 받고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 기각 의견이 있었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와 함께 처음 여호와의 증인 집회 참석 및 성서연구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신앙심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복지부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고, 소집해제 후 약 8개월 뒤부터 부모의 권유로 여호와의 증인 종교 집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깊이 공부한 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침례를 받았고, 군 복무 거부 신념에 근거해 예비군 대체복무를 위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의 침례가 늦고 침례 후 3개월여 뒤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실은 있지만, 신청인은 침례 여부와 무관하게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침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군 복무 거부를 인정하는 데 있어 여러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26 「소년법」 제1조, 제32조 제6항 참조

27 2021년 제29차 전원회의의 참조, 대체역 심사위원회(2022), 『제2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51쪽 참조

또한 신청인은 사회복지요원 복무 후 전도활동을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대체역 편입을 인용하여야 한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배워 익혔음에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늦은 나이에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가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그 짧은 기간에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예비군 훈련 기간은 3박 4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확고한 양심에 의한 편입신청인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받고 있고, 해당 서류에 신청인에게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기소결정서나 형사 판결서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대체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해당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에서 관계 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요청하는 것이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원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역 편입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군 복무 거부 신념과 모순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없고,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에 기재된 죄명만으로 범행내용을 추정하여 실제보다 더 중하게 오해하는 것보다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인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다. 토의 끝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지 않되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전원회의(2024년 4월 24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사무국은 위원 기피 신청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원 기피 신청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무국은 앞으로 신청인에 대한 대면조사 시에 조사관이 위원 명단 및 기피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누리집에 기피 신청 관련 서식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전원회의(2024년 5월 8일)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실조사자 17명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편입신청 서류 보완 요청이나 사실조사에 불응한 사실조사자 1명에 대하여 「대체역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 외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에 관한 대체역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다.²⁸

10) 제10차 전원회의(2024년 5월 22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대체역 제도개선 관련, 31세 이상인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체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²⁹

11) 제11차 전원회의(2024년 6월 5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여호와의 증인인 주변인의 영향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해 침례를 받고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한 1인에 대하여는 침례받은 지 3개월만에

²⁸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²⁹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여 군 복무 거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기각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 신청인이 종교를 접한 이후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 새로이 종교를 접해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의 진정성이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납득되며 △ 침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짧다거나 종교생활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신념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 예비군 훈련에 비해 복무 여건이 현저히 불리한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므로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되었다.

그 외에 참고사항으로 「대체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공유하였다. 2021년부터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간 합숙하여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제도에 대해 총 124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여,³⁰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공유하였다. 해당 결정은 2020년 1월 1일 「대체역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헌법재판소가 대체역 제도에 대해 합헌성을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기간조항), 제21조 제2항(합숙조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복무기관조항)가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요원의 실질적인 복무내용, 현역병 등과의 복무기간 및 복무강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 대체역 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에는 현행 대체역 제도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30 현재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등 결정, 현재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등 결정, 현재 2024. 5. 30. 선고 2022헌마1146 결정, 현재 2024. 5. 30. 선고 2023헌마32등 결정 각 참조.

이하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 수정본]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자료를 요약하였음(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pageIndex=4&cbldx=1128&bcldx=1007779&mode=&searchDateType=REG_DT&cateTypeCd=&tgtTypeCd=SUB_CONT&searchKey=&)

아울러 교도소장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³¹ 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³²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³³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표 3-4 현재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등 결정의 '결정 요지'

결정 요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의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도 희망하는 병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복무기관조항은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에 국한하였을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

31 현재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등 결정 참조.

32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되고, 2023. 10. 31. 법률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 현재 2024. 5. 30. 선고 2022헌마1146 결정 참조. 해당 내용에는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용은 사회복지시설, 병원, 응급구조시설,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의 경우와 최소한 같게 하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대체역 편입심사의 곤란성 문제를 극복하고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 다만,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별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병역법상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기간조항의 복무기간은 1.5배에 해당한다.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고와 위협에 노출된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하여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으며, 전투 준비와 훈련을 위하여 사실상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고, 초병으로서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하여야 한다. 한편, 자녀가 있는 현역병에게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 복무 기회를 준 것은 그 제도의 목적, 수행업무, 군 인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으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이견

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그 강도를 과도하게 정하여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는바, 위 조항들이 상호 결합하였을 때 대체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실상 징별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들이 상호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현역병의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아닌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복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무의 내용에 따른 복무의 강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형태는 합숙복무를 강제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의 분야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업무,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예시한 바 있고,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의 업무만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는다. 복무기관조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대체복무를 통한 공익에의 기여를 도외시한 것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할 것을 강제 받고 있는바, 보충역 중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법무관은 합

속복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합속복무가 강제되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이로 인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는 모든 병역의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속의 형태로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 받는 복무 방식이 되었다. 또한 합속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합속복무를 강제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일으킨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속조항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에 주력한 것으로, 그 고역의 정도가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12) 제12차 전원회의(2024년 6월 19일)

위원회는 무죄확정자 1명,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종교 교리에서 금지하는 흡연, 비신도 이성교제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중단하였는데, 가족과 함께 종교활동을 하던 때가 행복했음을 뒤늦게 깨달아 1년여 뒤 종교생활을 재개하여 회중에 복귀하였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흡연으로 책망 징계를 받은 신청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종교생활을 중단했던 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입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의사의 권유를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군사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이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양심에 불편함을 느껴 선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거부에 대한 신념은 종교생활 중단 여부에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종교적 고민과 방황, 일탈을 하기는 하였으나 군 복무 거부 신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신청인과 가족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오래 생활하였으며 신청인이 흡연으로 최근 책망받은 이후부터는 흡연을 완전히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할 수 있다.

▶ 기각 의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이탈했던 사실이 있으며, 복귀한 뒤에도 교리가 금지하는 흡연으로 회중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점, 그러한 행위들이 군 복무를 목전에 두고 일어났다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대체역 복무를 신청했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중학생 때 침례를 받은 후 종교의 교리에 따르는 삶과 종교활동이 아니라 폭력적 게임, 흡연 등을 하면서 책망을 받거나 이탈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관되고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근거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활동 중단 전 흡연으로 책망받았는데 종교활동에 복귀한 이후에도 흡연 행위로 다시 책망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인 종교적 양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13) 제13차 전원회의(2024년 7월 3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2024년 제5차 전원회의에 이어 위원회 「인권보호조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인권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가 본래의 대체역 편입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처리기한을 신설함 △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조치 등에 대한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함 △ 인권침해 여부 판단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위원회

의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신청인 권리고지 안내문'에 반영함 등이 있다.

위원들은 △ 신청인이 인권침해 신고를 하더라도 대체역 편입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음 △ 인권침해 조사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음 △ 유선 전화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외에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신고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길 바람 △ 인권침해 조사나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바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에서 이를 종합 판단하여 「인권보호조사준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14) 제14차 전원회의(2024년 7월 17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 중 대체역 편입신청 전 여러 차례 현역병 입영 신청을 했던 신청인에 대해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대학 친구들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빠르게 마쳐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데에 반해, 자신은 36개월 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져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두 차례 지원하였고, 한 차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신청인에게 확고한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음에도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가족들이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그간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역병 입영 지원을 계기로 부모님과 신앙을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고 특히 어려서 종교활동을 하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종교에 복귀하여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동료 형제로부터 군대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어긴다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는 경험담을 듣고, 군대를 가려고 했던 결정을 반성하고 어리석게 느껴졌

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청인의 답변 태도나 그 내용에서 대체역 복무에 대한 간절함을 알 수 있었고, 대체역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비록 신청인이 오랫동안 믿어 온 신앙 또는 신념과 다른 선택을 일시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생 전반에 걸쳐 본인이 지켜 온 신앙에 대한 자세와 군 복무에 대한 본인의 신념, 대체역에 대한 복무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혼란의 발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로 결국 이를 취소하였고 오랜 종교생활을 통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으며 대체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현역병 입영 신청 및 취소와 대체역 신청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부모님과 밀도 있는 성경 공부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로 인하여 본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신념이 확고해져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기각 의견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된 후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을 두 차례, 일반병 지원을 한 차례 했을뿐더러, 마지막 현역병 입영 지원 시점으로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시점까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대체역 이행 의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 자체로 신념 부족의 방증이자 대체역 이행 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

신청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해왔고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아 스스로의 신앙생활 기간 역시 상당함에도 군 복무를 앞두고 신념이 흔들렸다는 것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역 복무 의지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현역병 입영 신청이 본인의 판단임에 반해 대체역 편입신청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현역병보다 긴 대체역의 복무기간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흔들린다는 것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형성 정도가 약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군에 지원했다는 것은 결국 집총이나 여타 폭력의 행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므로 설사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양심의 실천 측면에서 인용에 이르기엔 부족하다.

15) 제15차 전원회의(2024년 8월 14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2명에 대해 각각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대체역 제도가 만들어진 뒤 재림교회 교인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사 시 동석한 신청인들의 대리인이자 재림교회 법률 고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재림교회 교단 관계자로부터 대체역 제도에 대한 재림교회의 전반적인 입장을 청취할 수 있었다.

재림교회는 기본적으로 집총거부 및 비폭력·비전투 분야 복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대체역 제도가 시행된 점에는 긍정적이거나, 재림교회 교단은 개인의 신앙과 신념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재림교회 교인 중에서 집총이나 전투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더라도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대체역 제도를 소개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반드시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 중 대체역 편입신청하려는 사람이 교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교단 자체적으로 당사자의 종교적인 양심상 결정이 확고한지 등을 조사한 뒤 변호사 조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신청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재림교회 교인이 되어 현재 재림교회 교단 계열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학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원하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기반하여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재림교회 교인으로 해당 신념에 따라 성실한 종교생활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집총거부에 대한 신청인의 신념을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종교 교단의 교리나 방침에 구애되지 않고 신청인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판단해야 한다. 신청인은 평화주의 신념은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고 성경에 기반하고 있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현역 입영 후 비전투분야에 배치된다 해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타협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앙에 기반한 신청인의 이런

신념은 확고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대체역 제도에 대한 이해와 복무 의지도 충분히 확인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재림교회 교인으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례가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긴 하나, 현재 교단이 보이는 군 복무에 대한 유연한 태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림교회는 과거 한국 신도들이 군에 입대하되 비폭력·비전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제도에 실패한 뒤 비폭력·비전투 복무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기각 의견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이 군 소집에는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근무, 무기휴대 및 살상 행위는 거부한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신청하는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재림교회는 집총거부 및 비무장·비전투 복무를 원칙으로 함에도 신도가 개인적인 선택으로 군 복무를 했다 하여 이를 교단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림교회 내에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 세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군 복무에 대해 교단이 가져왔던 입장과 신청인 신념이 충돌하는데 본인이 명확한 인식을 갖고 피력했는지 의문이다.

신청인의 대체역 신청이 양심상의 결정에 의한 신청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확고한 신념에 의한 대체역 편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 신청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재림교회에 다니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였으나,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성경을 공부하면서 집총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을 깨달아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살인 금지와 사랑 등을 말하는 성경 구절에 따르고자 하는데, 총을 잡고 쏘

는 연습을 하거나 전쟁을 연습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정신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행위라서, 집총을 거부하고 무기를 다루지 않는 예비군 대체복무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

신청인은 비록 집총 거부의 신념이 늦게 형성되었지만, 전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청인을 지켜보시고 인도했다는 종교적 확신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신청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한 점, 그간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점, 대체역 제도에 대해 이해가 깊고 긍정적이며 성실히 복무할 의지가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인용하여야 한다.

▶ 기각 의견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신청인이 전역 후 1년도 안 되어 군 복무 거부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재림교회는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총거부, 즉 비무장 분야에서의 복무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이 단기간에 확고한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이전에 군 복무를 하는 와중에도 양심적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신청인이 몸담고 있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고 비무장을 요구할 뿐이다. 또한 예비군 훈련은 현역과 다른 복무이고, 강도나 형태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진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 외, 육군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배우자의 영향으로 최근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고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앙기간이 짧아 확고한 신념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 상태에서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하여 인용으로 결정되었다.

16) 제16차 전원회의(2024년 8월 28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4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과거 우울증으로 3년여간 치료를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 폭력행위와 관계없는 종교 교리 위반으로 회중으로부터 제명되었다가 복귀한 이력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해당 신청인이 회중에 복귀한 시점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된 바로 다음 달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더라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복귀 시점은 회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신청인이 조정할 수 없고, 신청인은 제명되었던 기간에도 종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해 온 것이 확인된다는 점, 신청인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침례를 받아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한 점,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되었다.

17) 제17차 전원회의(2024년 9월 11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18) 제18차 전원회의(2024년 10월 2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대체역법」 제13조 제2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대체역법」 제5조 제5항),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 안건 표결에서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같은 수가 나와 어느 쪽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해당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례가 발생하기 전 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 해당 회차에 안건을 계속 논의하여 과반수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재의결하는 안(1안) △ 해당 회차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차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안(2안) △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이 있는 경우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³⁴ 기각으로 결정하는 안(3안)을 두고 논의하였다.

1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대체역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인용이든 기각이든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결정족수를 만족한 재의결이 필요함 △ 동물권이나 채식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등 일반 대중이 익숙하지 않은 신념에 입각하여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가부동수의 상황이 도출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체역 제도가 신청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 결과 기각해야 할 뚜렷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바, 같은 맥락에서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동수로 나오는 경우 곧바로 기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재의결하는 것이 신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 부합함 △ 대체역 편입 심사가 단심제인 상황에서 편입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구제받지 못하므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등의 의견을 냈다.

2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홀수 명의 위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대하여 이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다음 회의 때 재상정되더라도 가부동수의 결과가 반복될 경우 대체역 편입심사가 반복적으로 지연될 수 있어 신청인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3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체역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별도의 기각 결정 없이도 기각으로 보는 것이 온당함 △ 사전 회의 시 심사의견이 전원회의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한 번 의견이 표출된 경우 재논의하더라도 바뀌기 쉽지 않음 △ 가부동수의 경우 기각으로 봄이 원칙이며 이미 투표를 통해 얻은 결과가 있는데 재투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 「대체역법」 제5조 제5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조항이며 제13조 제2항은 대체역 심

34 「대한민국헌법」 제49조는 2문에서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논지로는 법제처(2023),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420쪽 참조

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결정 형태를 표현한 규정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적용되는 면이 다르므로, 둘을 결부시켜 해석해서는 안 됨 △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접수 되는 신청·청구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 나아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 사안을 결정하는 원칙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면 우리 위원회도 달리 평가될 필요는 없음 △ 현재도 편입신청 인용률이 매우 높은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기각 의견이 많다면 그 자체로 신청인이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한 논의 끝에 3안과 같이 앞으로 대체역 편입심사에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동수인 경우 기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19) 제19차 전원회의(2024년 10월 23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기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침례를 받아 군 복무 거부 신념에 대한 확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기각 의견이 제출된 신청인이 있었으나, 해당 신청인이 어려서부터 종교 활동을 하였고, 스스로 종교에 대해 탐구한 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진 때에 침례를 받기를 희망하여 단지 침례 시기가 늦었을 뿐,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용으로 결정되었다.

20) 제20차 전원회의(2024년 11월 13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 외 대체역 편입신청 재심사 제도에 대해 위원의 검토 요청이 있어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고하였고, 논의 끝에 타 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³⁵

³⁵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제21차 전원회의(2024년 11월 27일)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24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 중 두 명의 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신청인은 기독교계 종파인 브루더호프 공동체 소속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목숨을 해치는 일에 복무하지 않고 이를 돕지도 않는다는 공동체의 신앙에 기반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³⁶

신청인이 2022년 10월경 세례를 받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정식 신도가 되었는데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기까지 기간이 짧아 군 복무 거부 신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사전심사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세례를 받기 전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말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살인 금지, 평화주의 등의 교리를 배웠고, 세례를 받은 뒤 해당 공동체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여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형성한 평화주의 신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여 양심 결정의 실천이 인정되고,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도 인정된다고 보아 인용으로 의결하였다.

두 번째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지만 성인이 된 뒤 약 8년 이상 종교 생활을 중단하였고, 종교 활동을 재개한 직후에 범죄행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면심사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종교 활동을 중단했던 기간에도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

36 전세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멤버들이 2012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문서인 『우리의 믿음과 소명(Foundations of Our Faith and Calling: the Bruderhof)』의 제11절 인용: “평화의 길은 모든 생명, 특히 모든 생명에 경외심을 가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 명백히 확증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은 어떤 이유론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절대 금하십니다. 전쟁 중에서건 또는 자기방어를 위해서건, 사형 제도나 안락사, 낙태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군대에서든 비전투 요원으로도 복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일에 동의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 주의 만찬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였으며,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주요 종교 교리를 지켰다고 한다. 신청인이 입영 연기 가능한 일자를 모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종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차마 총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훈련을 하는 군대에 갈 수는 없어 거듭 연기했던 것이고, 최후에는 입영하지 않고 수감생활을 감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바, 종교활동 중단으로 인해 동료 신도들과의 교류가 끊어져 대체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기회가 없었던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았던 점은 사실이며, 대체역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종교적 신념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신청인이 추후 종교 활동 및 대체역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등 의욕적인 복무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이 종교 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길고 그 양상이 단순 무활동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단절에 가까워 보이며,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도 얼마 안 되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집회에 참석하여 왔다고 하나 약 8년 이상 종교 생활을 중단하여 과거 신앙생활이 의례적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 발생한 범죄 경력을 함께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진실되고 깊어 보이지 않는다.

아직 신청인의 신앙생활이 부족하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주변인 진술서, 입영 연기 가능한 일수를 모두 사용한 사실이나 종교 활동을 재개한 직후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거나 또는 종교 활동 재개 후 명확히 변화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2) 제22차 전원회의(2024년 12월 18일)

위원회는 무죄확정자 1명, 사실조사자 24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

용 결정하였다.

그 외에 제20차 전원회의에 이어 대체역 편입신청 재심사 제도에 대한 추가 검토³⁷ 및 2025년도 대체역 편입심사 계획(전원회의 22회, 사전회의 54회 예정)을 보고하였다.

³⁷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대한민국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

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 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 제88조**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90조**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

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시행일: 2025. 9. 19.] 제22조의2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 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할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할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

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001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0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43호, 2025. 7.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등)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

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이름표·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2025. 7. 8.>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복무형태·근무부서·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

-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30.]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

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향로표지 담당 공무원(향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향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 ⑫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 ⑮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 ⑯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 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 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 ⑲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⑳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㉗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169호, 2024. 1. 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0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43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7.] [국방부령 제1181호, 2025. 7.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5., 2022. 2. 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 2. 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5.>

-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5.>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

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으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6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7호, 202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80호, 2022.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1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28.] [병무청훈령 제2134호, 2025. 3.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체역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4조(대체역의 소집대상) ① 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② 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

의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15.>

제4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
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

[본조신설 2022.7.5.]

제5조(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 「병역법」 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행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제2장 대체복무요원

제1절 대체복무요원 소집

제7조(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8세 이상인 사람
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개정 2021.10.29.>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개정 2024.2.15.>
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개정 2021.10.29.>
7. 삭제 <2021.10.29.>

②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개정 2021.10.2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9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소집이 연기된 사람

-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3.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개정 2021.10.29.>
- ④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개정 2021.10.29.>
- 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
- ④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 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

3. 「병역법」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 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영”을 “소집”으로 “현역병”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개정 2025.3.28.>

- ②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의 연기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소집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④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출국자의 소집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개정 2021.10.29.>

제13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개정 2025.3.28.>

- ② 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을 해당 소집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
 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개정 2021.10.29.>
- ② 병무청장은 인도·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10.29.>

제15조(지연도착) ①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 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대체복무요원 소집불응자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의 소관부서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개정 2025.3.28.>

제17조(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는 인도·인접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인도·인접 결과 관련서류와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 행방불명 및 기피자 처리 등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 서류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별로 관리한다.<개정 2021.10.29., 2025.3.28.>

제2절 대체복무요원 복무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①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

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10.29.>

- ② 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1.10.29.>

제19조(대체복무요원 명부 작성)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20조(대체역 복무기록표 정리)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대체복무요원 1인 1매씩 갖추어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제63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

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 제2항에 해당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6조(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에 해당이 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①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법 시행령」제93조제8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대체역 복무기록표의 복무연장 사항 등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군대체복무

제1절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3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제32조(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3.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0.29.>
4.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 이월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야 하는 사람

5.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중에 퇴소한 사람
6.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제3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높은 사람(6년차부터 1년차 순),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소집해제일(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입일자)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1.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33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간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8.]

제3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소집통지(소집통지 안된 소집일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을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횡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인도·인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불응자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병역법」제88조”를 “병역법」제90조”로 본다.

제2절 예비군대체복무 사항

제3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지연도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인도·인접 후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되는 사람은 다음의 소집기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다.

제3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제3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

1. 「병역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학생
 2.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3.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병무청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답 경작 등)에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2.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 ⑥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한다.
- ⑦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는 제33조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 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 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개정 2025.3.28.>
 - 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

- ②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신설 2024.2.15.>

제42조(보상 및 치료 등) ①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각종 명부 등의 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명부 및 처리부 등의 자료는 전산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여비지급)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10.29.>

제4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2.15.>

부칙 <제170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종교·신념 사유로 연기한 해당연차의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한다.

부칙 <제1835호, 2021.10.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호, 2022.07.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4.0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호, 2025.03.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보류 대상 및 소집기간

[별표 2]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별지 1]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

[별지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별지 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

[별지 4]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보류 대상 및 소집기간

× : 전면보류, ○ : 일부보류

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 (6H/8H/12H, 1박2일)	확인 책임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향로표지 담당 공무원(향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향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소속장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병무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자		×	읍·면·동장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 (일반 및 상시위탁 집배원)	×	우체국장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	비서/경호실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소속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예비군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	지방보훈 (지)청장

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 (6H/8H/12H, 1박2일)	확인 책임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세관의 조사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관세청장
	경찰 학교	재학 중인 자	×	학교장
	청원 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	소속장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보호직 공무원	×	소속장
	질병 및 심신 장애인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
	구속 수감자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지자체장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	읍·면·동장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	소속장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	○ (12H/1박2일)	국정원장
	민방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8H)	소속장
	법관 및 검사	현직판사 및 검사	○ (8H)	소속장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 포함)의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 (6H)	소속장

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 (6H/8H/12H, 1박2일)	확인 책임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6H)	관할 경찰서장
	각급 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32,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재직 중 교사 제외 • 유치원 교사(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8H)	소속장
	대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외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8H)	소속장
	각급 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8H)	소속장

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 (6H/8H/12H, 1박2일)	확인 책임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 (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8H)	소속장
	전파 감시직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요원	○ (8H)	소속장
	국가안보 통신요원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소속장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소속장
		열차 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	소속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인자	○ (8H)	소속장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도시 철도, 전철 등)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 (12H/1박2일)	소속장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12H/1박2일)		
차장, 검수원		○ (6H)		
광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 (간접부요원 제외)	○ (8H)	소속장	

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 (6H/8H/12H, 1박2일)	확인 책임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8H)	소속장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 (8H)	소속장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 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 (8H)	소속장
	선박, 어선 승선자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 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승선증명서	○ (8H)	지방해양 수산청장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 승무원 및 정비사	○ (8H)	소속장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8H)	소속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1.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기준 및 범위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3	복무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4	복무기관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5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6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	전보·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8	복무기관의 장의 지휘 및 관리하에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9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0	직무수행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1-11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2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1-13	그 밖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4	휴가·외출·외박 기간 중 인명구조 등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2.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및 피부에 발생한 질병
2-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2. 위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

구분		기준 및 범위
2-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4	난청	<p>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5	악성종양	<p>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6	정신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나. 위 “가”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

발행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3층(둔산동, 파이낸스빌딩)

Tel. 042-605-2219

Fax. 042-605-2250

발행일

2025년 8월

디자인·제작

(주)디자인공공

Tel. 044-417-6126

